

제1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9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47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2 ~ 48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13
2012 ~ 4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2 ~ 50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2 ~ 51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2012 ~ 52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12 ~ 53	거창군 기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2012 ~ 54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61
2012 ~ 55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69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47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2조)

○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삭제)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을 변경함(안 제3조)

○ 군수 ⇒ 부군수로 변경함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함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에, 잔여기간 ⇒ 남은 기간, 월 ⇒ 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3.20. ~ 4.0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거창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 협의체를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 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군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및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3분의 1이상으로부터”를 “3분의 1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체의”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중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p> <p>6.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중 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생략)</p> <p>1. ~ 4. (생략)</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생략)</p> <p>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p>

현 행	개 정 안
<p>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p> <p>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4.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p> <p>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p> <p>⑥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⑦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p> <p>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선한다.</p> <p>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3.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명단 공개) <u>군수 또는 협의회 위원장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명단은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u>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u>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u>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협의회</u>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u>각 협의회</u> 위원</p> <p>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u>각 협의회</u> 위원</p> <p>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u>각 협의회</u>의 위원</p> <p>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회의 위원</p> <p>은 군수가, 실무협회의 위원은 대표협회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u>군수 또는 대표협</u>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u>1인</u>의 간사를 둔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당해</u>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u>3분의 1이상</u>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u>당해</u>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 (생략)</p> <p>④ <u>실무협의체의</u>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주 또는 사업장이 군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u> 2. <u>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u> 4. <u>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u> 5. <u>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 ----- ----- <u>1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u></p> <p>제9조(회의 등) ① ----- -----<u>해당</u>----- ----- -----<u>3분의 1이상의</u>----- -----</p> <p>② -----<u>해당</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대표협의체의</u>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u>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u> -----</p>

현행	개정안
<p>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항</u></p> <p>② (생략)</p> <p>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u>협의체의 의결사항</u>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u>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 -----</p> <p>제10조(회의록) ① ----- <u>각 호</u>----- -----</p> <p>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u>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u>대표 협의체</u>----- ----- -----</p> <p>제12조(의견의 청취) ----- ----- ----- ----- ----- ----- ----- -----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수당 등을 지급하고, <u>기타</u>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수당) ----- ----- ----- ----- <u>범위에서</u> ----- ----- <u>그 밖에</u> ----- -----</p>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 14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48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지방자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2조)

○ 국·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기금은 용도별로 관리, 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 ~ 제12조)

(1) 노인복지사업 : 군내 노인관련 단체

(2) 여성복지사업 : 군내 여성관련 단체 및 여성관련 사업 수행 단체 등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나누어 지원

(4) 기초생활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5) 생활안정 지원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

바.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13조)

사.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30억(기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3.20. ~ 4.0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5.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용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8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1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노인관련 단체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여성복지사업

제9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① 제3조제2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단체로 한다.

1. 여성관련 비영리단체 및 공익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
 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② 제3조제2호의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 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 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여성관련 주요 사항

제4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3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특별장학생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에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장학생 중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지출계획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장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제11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③ 제3조제4호의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은 자활공동체는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2.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

제6장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등) ① 제3조제5호의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의 학자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5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기금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
2.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4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제7장 보칙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용도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및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3.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각 계정별 기금사용에 대한 비용
 - 노인회, 여성단체 공모사업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따른 제비용
-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5. 생활안정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a)	군비	206	186	186	186	186	950
세입 (b)	이자 및 기타수익	316	156	156	156	156	940
총 비용(a-b)		- 110	30	30	30	30	10

3. 관련 의견

- 기금 통합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 절감 효과기대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용 식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49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4급이상 1% 이내, 5급 6.7% 이내, 6급 28.2% 이내, 7급 31%이내, 8급 25.3% 이내, 9급 7.8% 이상
- 조정 : 4급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8% 이내, 7급 31%이내, 8급 26% 이내, 9급 7% 이상

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6급 10% 이내, 7급 23% 이내, 8급 23% 이내, 9급 44% 이상
- 조정 : 6급 11% 이내, 7급 25% 이내, 8급 23% 이내, 9급 41%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정원 : 증 2명

- 현행 : 650명(본청269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 사업소54명, 읍39명, 면149명)
- 조정 : 652명(본청272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6명, 사업소54명, 읍38명, 면148명)

○ 일반직 6급이하 : 증 9명

- 현행 : 514명(본청220명, 의회5명, 직속기관85명, 사업소34명, 읍34명, 면136명)
- 조정 : 523명(본청227명, 의회7명, 직속기관86명, 사업소34명, 읍33명, 면136명)

○ 기능직 : 감 7명

- 현행 : 64명(본청31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2명)
- 조정 : 57명(본청27명, 의회4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연 82,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5. 22 ~ 2012. 6.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50명”를 “6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6명”을 “638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50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36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52명</u>-----</p> <p>-----</p> <p>1. ----- <u>638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u>7% 이내</u>	<u>28% 이내</u>	31% 이내	<u>26%이내</u>	<u>7%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u>11% 이내</u>	<u>25% 이내</u>	23% 이내	<u>41%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52 (650)	272 (269)	14	126 (125)	62 (61)	64	54	38 (39)	148 (149)		
정	무직	1	1									
일	반	직	소계	562 (553)	241 (234)	10 (8)	92 (91)	29 (28)	63	38	34 (35)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23 (514)	227 (220)	7 (5)	86 (85)	25 (24)	61	34	33 (34)	136
별	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	구직 (연구사)	6	2		3	3		1				
지	도직 (지도사)	25			25	25						
기	능직	57 (64)	27 (31)	4 (6)	6	5	1	15	4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82	82	82	82	82	410
소계(a)		82	82	82	82	82	41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82	82	82	82	82	410

3. 관련 의견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정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증가액 : 59백만원
 - 기본급 38백만원, 수당 13백만원, 급식비 등 8백만원
- 물건비 증가액 : 4백만원
 - 직급보조비 3백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백만원
- 이전경비 증가액 : 19백만원
 - 성과상여금 6백만원, 연금부담금 6백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백만원, 연금지급금 3백만원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0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 (2)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정수의 1/3이상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1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5억(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31. ~ 2012.6.1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를 “제142조에 따라 아립예술제”로 “거창군아립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립제”라 함은”을 ““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립예술제위원회”는 “아립제””를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을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에서만”을 “범위에서만”으로 한다.

제6조 중 “매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납폐쇄기간후 1월”을 “출납폐쇄 후 8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4조로 하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아름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름답예술제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u>거창군아립제진흥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42조에 따라 아립예술제----- -----<u>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u>-----</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u>아립제</u>"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u>아립예술제위원회</u>"는 "<u>아립제</u>"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u>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란</u> ----- ----- ② "<u>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u>"란 아립제-----</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p>1. ~ 2. (생략) 3. <u>기타</u> 수입금</p> <p>② <u>거창군</u>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② <u>군</u>-----</p>
<p>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u>거창군</u>세입·세출외 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립제진흥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② (생략)</p>	<p>제4조(기금의 관리) ① -----<u>군</u>-----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u>각 호</u>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p> <p>1. (생략)</p> <p>2. <u>기타</u> 아립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p> <p>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u>범위내</u>에서만 사용한다.</p>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u>각 호</u></p> <p>-----</p> <p>1. (생략)</p> <p>2. <u>그 밖에</u>-----</p> <p>-----</p> <p>② -----<u>범위에서</u> <u>만</u>-----</p>
<p>제6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u>매회계연도마다</u> 아립제위원회로부터 아립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u>범위내</u>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6조(기금운용계획) -----<u>회계연도</u> <u>마다</u>-----</p> <p>-----<u>범위에서</u>-----</p>
<p>제8조 (생략)</p>	<p>제13조 (현행 제8조와 같음)</p>
<p>제9조(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아립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u>의거</u>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립제위원회에 지급한다.</p> <p>② 아립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u>출납폐쇄기간 후 1월</u>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p> <p>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출납폐쇄 후 3월</u> 이내에 <u>군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① ----- -----<u>따라</u>-----</p> <p>-----</p> <p>② ----- -----<u>출납폐쇄</u> <u>후 80일</u>-----</p> <p>-----</p> <p>③ ----- -----<u>군의회</u>에 <u>제출</u> <u>하여 의결을</u>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제9조(아립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p>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p>
<신설>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p>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61 353 309 398"><신설></p> <p data-bbox="161 562 419 607"><u>제10조</u> (생략)</p>	<p data-bbox="799 331 1426 421"><u>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p> <p data-bbox="799 562 1273 607"><u>제14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군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나. 관련 조문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 아림제 행사추진,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이 기금은 이자액 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군 비	17	17.58	18.18	18.80	19.44	91.00
	소계(a)	17	17.58	18.18	18.80	19.44	91.00
세입	이자	17	17.58	18.18	18.80	19.44	91.00
	소계(b)	17	17.58	18.18	18.80	19.44	91.00

※ 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율 3.4% 적용

3. 관련 의견

○ 아림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진흥이나 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아림제 행사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이 상 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1
----------	-----------

제출연월일	2012. 6. 29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5조)

-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의 받아야 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5천만원(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5.31. ~ 6.2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 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종 승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2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 (1)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2)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3) 규정에 의한(의하여) ⇒ 따른(따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500백만원(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25. ~ 6.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에 따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4조 본문·제5조제2항 본문 중 “각 호”를 “각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4조제2호·제10조제4호·제16조·제1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제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5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 방자치법」 제142조----- ----- 제43조에 따라----- ----- 중소기업육성기금----- ----- -----</p>
<p>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p>
<p><신 설></p>	<p>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기타 수입금 ②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p>	<p>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 2. (생략) 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자금을 대출한다.</p>	<p>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 ----- -----<u>에 따른</u>-----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u>범위안에서</u>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u>범위안에서</u>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융자조건) ① ----- -----<u>범위에서</u>----- ----- ② ----- ----- -----<u>범위에서</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u>범위안에서</u>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위에서</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략)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 4. (생략)</p>	<p>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호의 어느 하나</u>-----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변경사항 통보) ----- -----<u>그 밖에</u>----- ----- ----- -----</p>

현행	개정안
<p>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u>기타</u>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u>매 회계연도마다</u>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u>매 회계연도마다</u>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계연도마다</u>----- ----- -----</p> <p>④ ----- -----<u>회계연도</u> <u>마다</u>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u>한다.</u></p>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 관련조문 : 제3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군비		500	1,500	1,500	1,400	1,000	5,900
	소계(a)		500	1,500	1,500	1,400	1,000	5,900
세입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500	1,500	1,500	1,400	1,500	5,900

※ 기금 적립목표액 100억원중 46억원 적립(2012년 기준)

3. 관련 의견

- 타군에 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저조하여 조기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작성자 : 경 제 과 장 이 재 영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3
----------	-----------

제출연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억제 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별표)

나.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안 제3조)

(1) 전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서
- 소·말 100m , 젖소·사슴·양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

- 지형도면 작성 고시 : 20,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5.23. ~ 6.1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
5.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젓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

제5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별 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 : 100m 이내 - 젖소·사슴·양 : 250m 이내 - 돼지·개·닭·오리 : 5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 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
2.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제2항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 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4
----------	-----------

제출년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의 명칭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으로 규정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 농축산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의 추천으로 함

라.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으로 함
-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거창군 농업회의소 부회장,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그밖에 농업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리.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

마.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

바. 시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함
- 수상자에게는 정부의 포상 추천,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등 특전을 부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29. ~ 6.1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시상인원 및 시기) ① 농업인대상은 식량작물, 환경농업, 축산, 과수, 원예특작, 농산물가공 유통수출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3. 농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4.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3. 거창군농업회의소 부회장

4.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13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상) ①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하고, 핸드프린팅 동판은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게시한다.

②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의 포상 추천
2.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3. 신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 강사, 해당분야 전문위원 및 명예지도관으로 위촉
4.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에 농업인대상 표장사용 허용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신지식 농업인상을 받은 농업인은 이 조례 제14제1항의 핸드프린팅 동판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전을 부여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4조제12항(시상)

: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하고, 핸드프린팅 동판은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게시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0원 정도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

[별지 서식]

『거창군 농업인대상』 추천서

추천인			
소속		성명	
주소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	
피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신청분야	
영농경력		주 품목명	
추천 사유	추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배경 등을 간단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함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위 사람을 거창군 농업인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직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 서류 등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55
----------	-----------

제출년월일	2012.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농업보조금 :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교부하는 자금
- 농업경영체 :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 보조사업자 : 농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 보조금 총액제 : 농업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 보조금 일몰제 :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정의함

나.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등

다. 보조금지원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신규 신청자 ⇒ 지원받은 보조금액 적은 ⇒ 친환경 영농정도 ⇒ 젊은 신청자 ⇒ 해당 분야 영농규모가 큰 신청자

라. 보조금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마.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선정단계 ⇒ 실행단계 ⇒ 완료단계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축시설은 10년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사. 보조금 총액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업인은 7천만원
-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아. 보조금 일몰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농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처음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자. 총액제,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하나의 사업이 총액제 금액 또는 일몰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몰제를 적용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차. 보조금 제제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포기로 미추진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제기간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25. ~ 6.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
5.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농업경영체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자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 (“거창군보조금관리시스템” 및 “거창군농업소득지원사업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보조금 제제기간) 보조사업자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